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의8서식] <신설 2024. 8. 6.>

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

※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90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	기관·단체 설립일
	소재지	전화번호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. 전담조직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지정여부 결정	→	지정서 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-	---	--------

기관 또는 단체

처리기관: 산림청